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20. 5. 13. 사회건설위원회

#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4월 1일

나. 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5. 1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경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시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, 내용, 경관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한 공 청회(안 제6조 ~ 제8조)
- 경관사업의 대상, 경관사업계획서,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, 경관사업추진협 의체 구성 및 운영,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(안 제9조 ~ 제15조)

-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, 내용,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,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(안 제16조 ~ 제22조)
- 경관심의 대상(안 제23조 ~ 제24조)
- 경관 관련 위원회,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경관 관련 위원회의 심의대 상 및 자문대상 등(안 제25조 ~ 제29조)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임선영)

- 본 조례안은 「경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계획 수립 등 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- O 주요 내용은
- 안 제1장에서는 경관관리의 기본방향, 구청장의 책무
- 안 제2장에서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
- 안 제3장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, 협의체 구성, 재정 지원 등 경관사업에 관 한 사항
- 안 제4장에서는 경관협정 내용, 지원 등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
- 안 제5장에서는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
- 안 제6장에서는 경관 관련 위원회의 심의, 자문 등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 경관계획, 경 관사업 등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214 번 호

발의년월일: 2020년 4월 일

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3명

### 1. 제안이유

○ 「경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시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, 내용, 경관계획의 수립· 변경을 위한 공청회(안 제6조 ~ 제8조)
- 나. 경관사업의 대상, 경관사업계획서,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,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,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(안 제9조 ~ 제15조)
- 다.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, 내용,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,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(안 제16조 ~ 제22조)
- 라. 경관심의 대상(안 제23조 ~ 제24조)
- 마. 경관 관련 위원회,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경관 관련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등(안 제25조 ~ 제29조)

# 3. 제정안: "별첨"

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경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0. 2. 20. ~ 2. 24.) : 의견 없음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시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경관계획"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- 2. "경관사업"이란 「경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3. "경관협정"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.
- 4. "경관심의"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.
- 5. "경관사업자"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.
  - 가. 중앙행정기관의 장
  - 나. 서울특별시장
  -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
  - 라.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은 자

- 6. "경관가이드라인"이란 건축물, 가로,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.
- 제3조(경관관리의 기본방향) 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,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
- 제4조(구청장·경관사업자·구민의 책무)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고,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④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2장 경관계획

- 제6조(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)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(이하 "제안서"라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경관계획수립 제안서
  - 2. 경관현황분석도
  - 3. 경관기본구상도
  - 4.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

- 5.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
-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1.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
- 2.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
- 3.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,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
- 4.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
- 5.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
- 6.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경관계획의 내용)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 - 1. 가로, 광장,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  - 2. 문화시설,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  - 3.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
  - 4.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  - 5. 지역의 고유한 자연·역사·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- 6. 도시재생활성화지역,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, 한강변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  - 7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)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

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- 1. 공청회의 개최 목적
- 2.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
- 3.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
- 4.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
- ② 구청장은 「경관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  - 1.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
- 2.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
- 3.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
- ③ 경관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⑤ 공청회의 주재자·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제3장 경관사업

- 제9조(경관사업의 대상)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교육,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  - 2.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
  - 3. 노후·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

- 4.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·관리를 위한 경관사업
- 5.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·개선을 위한 사업
- 6. 도시 구조물, 공공시설물의 정비·개선을 위한 사업
- 7.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
- 8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0조(경관사업계획서) ①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1.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
    - 2.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
    - 3. 경관사업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
    - 4.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
    - 5.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
    - 6.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
    - 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- 제11조(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)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 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
  - 2. 경관계획과의 연계성
  - 3.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
  - 4.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
  - 5.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
  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12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- 1.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
  - 2. 경관사업을 마친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결정
  -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- 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
  - 2. 경관사업 대상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
  - 3.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 - 4. 경관관련 전문가
  - 5. 경관사업 시행자
  - 6.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
  -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-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  -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,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⑧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- ⑨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- ①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,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①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.
  - 1.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, 설계비 및 연구비
  - 2.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
  - 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
  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
  - 2.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4조(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) ①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(협정) 재정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경관사업 지원에 대한 평가)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 등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경관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자 등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미지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 제4장 경관협정

- 제16조(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)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  - 1.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·점유자·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
  - 2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**제17조(경관협정의 내용)**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 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
  - 2.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  - 3.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- 4.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- 제18조(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 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규정
  - 2.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-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·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(변경)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9조(경관협정서 인가 및 작성 등) ①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(체결·변경) 인가(폐지) 신청서와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법 제19조 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경관협정의 승계 등 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- 3. 경관협정 관련 도서
  - 4. 경관협정 이행계획서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- 제20조(경관협정의 승계자)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(이하 "협정 체결자"라 한다)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 협정 승계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구청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  - 1.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
  - 2.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  - 3.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, 설계비 및 연구비
  - 4.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
  - 5.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
  - 6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
- ⑤ 제4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- 제22조(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)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사업명
  - 2. 경관계획과의 연계성
  - 3. 사업비 산출근거
  - 4. 사업비 조달 계획
  - 5.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
  - 6. 유지관리 계획
  - 7. 사업계획 관련 도서
  - ② 그 밖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### 제5장 경관심의

제23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)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(단일공사)
- 2.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(단일공사)
- 3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- 제24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  - 2.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  - 3.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별표 1의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 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  - 5.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 (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, 높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
  - 6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   - 1.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,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 면적, 층수, 높이 등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

### 제6장 경관위원회
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.

- 1. 영등포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
- 2.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
- 3.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
- 4. 영등포구 건축위원회
- 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소관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.
  - 1. 영등포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
    - 가.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
    - 나.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다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  - 2.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: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
  - 3.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: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
  - 4. 영등포구 건축위원회: 법 제30조제1항제7호
- 제2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공동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2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되,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할 수 있다.
  -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관계획수립권자, 경관사업 시행자, 협정체결자,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⑦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- 제27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대상) ① 영 24조제3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
  - 2.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
  - 3.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  - 4.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
  - 5. 제24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
  - 6.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
  - 7.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
- 제28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)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- 2.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
- 3.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
-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29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·자문 시기 및 심의절차 등) 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·자문 시기는 심의·자문대상에 대하여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, 공동주택의 색채경관계획은 준공 1년 전까지심의·자문을 마쳐야 한다.
  - ②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지 제1호 서식]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

	거기	괴취 스키 페이	.1	처리기간
	성판.	계획 수립 제안	서	60일
	상 호(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	
제안자	성 명(대표자)		생년월일(남/여)	
	주 소(사무실)		(전화:	)
	구 역 명			
제안	위 치			
구역	면 적			
개요	용도지역			
	거주인구 및 세대수			
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. 년 월 일 제안자: (서명 또는 인) 영등포구청장 귀하				
구비서류 1.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				
가. 제안의 개요       없음         나.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     없음				
라. 마. 2. 경 3. 경	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관 현황분석도 관 기본구상도(1/5,000) 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	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·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	-진에 관한 사항	
	<ul><li>5. 현황사진</li><li>6.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</li></ul>			

## [별지 제2호 서식]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

거리 나이 스이 시원 나				처리기간		
경관사업 승인 신청서					60일	
	상 호(명 칭)			사업자등록번호		
신청인	성 명(대표자)			생년월일(남/여)		
	주 소(사무실)			(ટ્	· 한화:	)
	사 업 명					
	사업기간					
경관 사업 개요	사업개요					
	사업주체					
	소요예산					
「경관법」제16조제2항·「경관법 시행령」제8조제1항·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신청인: (서명 또는				서명 또는 인)		
영등포구청장 귀하						
구비서류 수수료						
1. 사업계획서(사업의 목표,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, 경관계획과의 연계성, 유지관리 방안, 사업의 기대효과 등) 없음						
2. 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.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						
4.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						
	5.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.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					
7 그 바에 그처자이 피어치다고 저하는 사하						

#### [별지 제3호 서식] 경관사업(협정) 재정지원 신청서

경관사업(협정) 재정지원 신청서					
	상 호(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		
신청인	성 명(대표자)		생년월일(남/여)		
	주 소(사무실)		(전화:	)	
	사 업 명				
경관	사업기간				
사업(협정) 개요	사업개요				
	사업주체				
	소요예산				
	구 분	금액(원)	F)	]율(%)	
الدام الد	총사업비				
사업비	지원 받고자 하는 시업비				
	자체부담 사업비				

「경관법」제18조제1항·제25조·「경관법 시행령」제17조·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제14조제1항·제21조·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(협정)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영등포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

- 1. 사업비 산출근거
- 2. 사업(지원)비 사용계획서
- 3.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
- 4.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
- 5.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

## [별지 제4호 서식] 경관협정운영회 설립(변경) 신고서

경관협정운영회 설립(변경) 신고서			처리기간		
	3년합경군경외 월급(년경) 선고지 14일				
	상 호(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		
신고 자	성 명(대표자)		생년월일(남/여)		
	주 소(사무실)			(전화:	)
75	· 당관협정 명칭				
ŏ.	]정지역 위치				
ĥ	효 기 간				
7	으요 협정내용				
위반시 제재사항					
Š	협정 체결자수				
「경관법」제20조제2항·「경관법 시행령」제12조·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(변경)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					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영등 <b>포구청장</b> 귀하					
구비서류 수수료			수수료		
1. 경관협정운영회 규약(운영목적 및 방법, 기능 및 역할 등) 없음			없음		
2. 대표자 및 회원명단					
3.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					
4.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					

#### [별지 제5호 서식] 경관협정(체결·변경) 인가(폐지) 신청서

#### 경관협정(체결·변경) 인가(폐지) 신청서 상호(명 칭)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(대표자) 생년월일(남/여) 주소(시무실) (전화: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, 범위 생년월일(남/여) 대표자 경관협정운영회 주 소 (전화: 유 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년 월)

「경관법」제21조제1항·제22조·제23조제1항·「경관법 시행령」제13조·「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경관 조례」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(체결·변경) 인가(폐지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

(서명 또는 인)

#### 영등포구청장 귀하

#### 구비서류

- 1.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
- 2. 경관협정 사업비(운영비) 운용 계획서(지원, 자체조달)
- 3. 경관협정 운영 규약
- 4. 경관협정 이행계획서(협정 위반・승계・변경・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)
- 5. 경관협정 변경 · 폐지 이유서
- 6. 경관협정 관련 도서
- 7. 경관협정자 서명부(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·회의록 등 포함)

#### [별지 제6호 서식]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

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				
명	칭			
소 재 지				
리 교 기	성명	생년월일		
대표자	주 소			
운 영 목 적				

「경관법」제21조제1항·「경관법 시행령」제13조·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제19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영등포구청장 (인)

## [별지 제7호 서식]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

경관협정 승계 신고서			처리기간			
				7일		
신	상 호(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			
청	성 명(대표자)		생년월일(남/여)			
인	주 소(사무실)		(전	[화:	)	
승	상 호(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			
8 계	성 명(대표자)		생년월일(남/여)			
내	주 소(사무실)		(전	[화:	)	
" 역	경관협정					
·	승계내용					
승						
계						
사						
유						
「경관법」제24조·「경관법 시행령」제16조·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						
승 계 인 : (서명 또는 인) 피승계인 : (서명 또는 인)						
영등포구청장 귀하						
구비서류 수수료						
1.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사유 없음						
2.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						
3.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						

## [별표 1]

#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

구 분	분 류	건 축 물 의 종 류
1. 경관지구	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	-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초과 - 건폐율 30% 초과 건축물
2. 중점경관관리구역	한강변	-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- 7층 이상 공동주택
3. 공공건축물	모든 용도	5층 미만 또는 1,000㎡미만 허가(협의) 대상 건축물
4. 일반건축물	공동주택	색채경관계획(재도색 포함) 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.)
	다중이용시설 (공동위원회)	연면적 5,000㎡ 이상 (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)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